

(對外祕)

학교법인 피어선기념학원
제220회 이사회 자료

2023. 2. 23.

법인사무국

학교법인 피어선기념학원
제220회 이사회 회의순

○ 사 회 : 이계안 이사장

1부. 예배

■	사도신경	다같이 【1】
■	찬송 - 찬송가 67장 -	다같이 【2】
■	기도	박승현 이사
■	성경봉독 -삼상8:10-22 -	다같이 【3】
■	주기도문	다같이 【4】

2부. 이사회 회의

1.	개 회 선 언	이계안 이사장
2.	전차 회의록 보고	박재순 국장 【6】
3.	법 인 보 고	박재순 국장 【7】
4.	회 무 처 리	
	1호 정관 변경 건	【10】
	2호 총장 보수 책정 건	【14】
	3호 교직원 징계위원회 구성의 건	【16】
	4호 평택대학교 건설가계정 대손상각처리의 건	【20】
	5호 규정 개정의 건	【22】
	6호 2022학년도 하반기 트랙전환 및 승진 임용 심의 건 ...	【28】
	7호 연구년 조기복귀 신청 심의 건	【48】
	8호 기타 안건	【50】
5.	폐 회	이계안 이사장
	별첨자료	【52】

사 도 신 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67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통일 31)

W. Kethe, 1561
Adapt. by R. Grant, 1833

O worship the King all glorious above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시 145:10)

창조주
LYONS: 10.10.11.11.
Attr. to J. M. Haydn; Arr. by W. Gardiner, 1815

보통으로

1.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2. 능력이 과왕은 다 찬송하리라
3. 저 아름다움은 다 찬송하리라
4. 질그릇의 신은 사탄의 빛이 아니라 찬송하리라

예부터영원히 참방패시니
큰우레소원로에주노하히나고
은함백성명지으신만왕이시니

그영광의주를다찬송하라
꼭풍의날개로달려가신다
저자비영원히변함없어라
아멘

쉬운 기타코드(capo=1st) A^b→G E^b→D D^b→C E^b7→D7 B^b7→A7

□ 성경말씀 : 사무엘상 8:10~22

- 10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와 모든 말씀을 말하여
11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12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13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14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15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십일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16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17 너희의 양 떼의 십분의 일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18 그 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 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19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20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21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22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 말씀다지기

그리스도인도 나름대로 이익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자기 이익을 위해 누구의 왕이 되고 누구는 희생양이 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모두가 자기 이익만 추구하면, 결국 서로 물고 뜯으며 함께 멸망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희생양이 아닌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님만이 인류의 왕이요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우리를 위해 기꺼이 희생하신 그분을 닮아 가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친히 희생양이 되어 인류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뿐이기 때문입니다.

주 기 도 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법 인 보 고

■ 임원 현황

단위 : 명

구분	이사장	이사	감사	비고
인원	1	8	2	합계 11명

■ 직원 현황

단위 : 명

구분	사무직	기능직	경비직	미화원	비고
학교법인	5	-	-	-	합계: 5명

■ 건물 현황

구분		면적	재단소유면적	비고
평택대 교내		교육연구시설	80,556.32m ²	20동
평택대 교외		근린생활시설(승두리)	1,148.42m ²	2동
		관 사	154.46m ²	
		측사, 창고(퇴계원리)	309.08m ²	2동
교육용 건물 계			82,168.28m²	
서울 본관	지하~3층	2,748.92m ² (831.54평)	2,748.92m ²	사무실 6실 상가 3실
	4층~11층	5,635.68m ² (1,704.78평)	872.82m ²	전체 79세대 중 법인소유 14실
	소계	8,384.6m ² (2,536.3평)	3,621.74m ²	43.2%
서울별관	3층 건물	513.21m ² (155.24평)	513.21m ²	상가 12실
평택라이프	4층 건물	454.30m ² (137.42평)	454.3m ²	원룸 15세대
수익용 건물 계			8,210.99m²	
건물 합계			90,379.27m²	

■ 토지 현황

*	지 번	지 적		비고
1	경기도 평택시 용이동 605번지	131,062.4m ²	39,646평	
2	경기도 안성시 승두리 782-16외 3필지	6,641m ²	2,009평	
3	경기도 남양주시 퇴계원리 산4-3외 1필지	36,364m ²	11,000평	
교육용 토지 계		174,067.4m²	52,655평	
1	서울시 신문로 2가 89-27번지	2,148.7m ²	650평	
2	서산시 산동리 30번지 외 4필지	11,866m ²	3,590평	
3	평택시 소사동 137-76외 7필지	3,313m ²	1,002평	
4	평택시 용이동 457-8	265.7m ²	80.4평	
수익용 토지 계		17,593.4m²	5,322평	
토지 합계		191,714.8m²	57,994평	

1호, 정관 변경 건

1

변경 사유

(제44조) 임용
 대학교의 교원으로 재직 중 총장으로 임용된 자가 총장의 임기를 마친 경우 교원으로 임용되는 것을 명확화하고자 함

2

변경 내용

변경 전	변경 후(의견 수렴 후)
<p>제44조(임용) ①대학교의 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다만, 총장에 대하여 그 임기 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6. 12.7., 2019.10.25., 2021.12.06.></p> <p>②총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종료 3개월 이전에 직무수행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사회 의결에 따라 3년 연임할 수 있고 직무수행 방식에 대해서는 별도 규칙을 따른다. <신설 2006.12.7., 개정 2012.7.23., 2021.12.06., 2022.12.26.></p> <p>③총장 이외의 전임교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계약조건을 정하여 이사장이 임용한다. 다만, 비전임교원(강사, 겸임, 초빙, 대우, 명예 등)의 경우, 총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05.10., 2019.10.25., 2021.12.06.></p> <p style="margin-left: 20px;">1.근무기간</p> <p style="margin-left: 40px;">가.교수 : 정년까지의 기간.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p> <p style="margin-left: 40px;">나.부교수, 조교수 :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개정 2012.7.22.></p>	<p>제44조(임용) ①대학교의 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다만, 총장에 대하여 그 임기 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6. 12.7., 2019.10.25., 2021.12.06.></p> <p>②총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종료 3개월 이전에 직무수행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사회 의결에 따라 3년 연임할 수 있고 직무수행 방식에 대해서는 별도 규칙을 따른다. <신설 2006.12.7., 개정 2012.7.23., 2021.12.06., 2022.12.26.></p> <p>③총장 이외의 전임교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계약조건을 정하여 이사장이 임용한다. 다만, 비전임교원(강사, 겸임, 초빙, 대우, 명예 등)의 경우, 총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05.10., 2019.10.25., 2021.12.06.></p> <p style="margin-left: 20px;">1.근무기간</p> <p style="margin-left: 40px;">가.교수 : 정년까지의 기간.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p> <p style="margin-left: 40px;">나.부교수, 조교수 :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개정 2012.7.22.></p>

<p>2.급여 정관 제51조로 정하는 보수 및 수당</p> <p>3.근무조건 교수시간 및 소속학과 등에 대한 사항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p> <p>4.업적 및 성과 연구실적·논문지도·진로상담 및 학생지도 등에 대한 사항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p> <p>5.재계약 조건 및 절차 근무기간 종료 후 다시 임용되는 조건 및 절차에 대한 사항에 관하여는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p> <p><u>6. 신설</u></p> <p>④제3항의 계약조건은 본인의 동의와 총장의 제청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6.12.7.></p> <p>⑤~⑩ 생략</p>	<p>2.급여 정관 제51조로 정하는 보수 및 수당</p> <p>3.근무조건 교수시간 및 소속학과 등에 대한 사항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p> <p>4.업적 및 성과 연구실적·논문지도·진로상담 및 학생지도 등에 대한 사항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p> <p>5.재계약 조건 및 절차 근무기간 종료 후 다시 임용되는 조건 및 절차에 대한 사항에 관하여는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p> <p><u>6.계약조건은 본인의 동의와 총장의 제청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신설 2023.00.00.></u></p> <p><u>④ 총장은 제3항의 교원을 겸할 수 없으며, 대학교의 교원으로 재직 중에 총장으로 임용된 자가 제2항의 임기를 마친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다음날에 임용직전의 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교원 직에 계약기간이 있는 경우 새로운 임용계약 기간은 당초 계약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u> <개정 2006.12.7., 2023.00.00.></p> <p>⑤~⑩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p> <p><u>(시행일) 이 정관은 2023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u></p>
---	---

3 **자문 변호사 의견**

안녕하세요. 김광산 변호사입니다.

재직 중 교수가 총장으로 임용된 경우 총장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교수 신분이 상실되지 않고 교수 신분으로 복귀하는 것은 첨부해주신 대법원 2010두15490 판결에 따라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를 정관에서 명문의 규정으로 두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여지는바, 첨부해주신 경희대 정관처럼 변경을 하시는 것은 바람직해보이며, 보내주신 정관변경안으로 개정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1. 경희대학교

제37조(임용) ⑥ 각 대학교의 총장은 제3항의 교원을 겸할 수 없으며, 대학교의 교원으로 재직 중에 총장으로 임용된 자가 제1항의 임기를 마친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다음날에 임용직전의 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교원 직에 계약기간이 있는 경우 새로운 임용계약 기간은 당초 계약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변경 2006. 11. 1.)

2. 건국대학교

제43조 (임용·학교의 장의 임기 등) ④대학교의 총장은 제2항의 교원을 겸할 수 없으며, 대학교의 교원으로 재직중에 총장으로 임용된 자가 제1항의 임기를 마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총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에 총장 임용직전의 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3. 국민대학교

제43조(임용) ③ 학교의 교원으로 재직 중에 학교의 장으로 임용된 자가 그 임기를 마친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에 학교의 장 임용 직전의 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2007.07.24. 개정>

4. 단국대학교

제35조 ⑦ 대학교의 총장은 제2항의 교원을 겸할 수 없으며, 대학교의 교원으로 재직 중에 총장으로 임용된 자가 제1항의 임기를 마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에 총장 임용 직전의 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다만, 총장의 임기 중 제42조의 정년에 달한 경우에는 총장 임기 만료일에 당연히 퇴직한다. <개정 2018.11.9.>

2호, 총장 보수 책정의 건

3호, 2023학년도 교직원징계위원회 구성의 건

1 교직원 징계 위원회 구성(안)

□ 2023학년도 교원징계위원회 구성(안)

「학교법인 피어선기념학원 정관」

제63조(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 ①교원징계위원회는 위원 9인(위원장 1인을 포함한다)으로 조직한다.
<개정 2017.02.16., 2019.10.25., 2022.08.24.>

②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와 제3항 각목에 해당하는 사람 2인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의 수가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특정 성(性)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02.16., 2022.04.27.>

③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다.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라.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본항 신설 2017.02.16.>

□ 2023학년도 직원징계위원회(안)

「학교법인 피어선기념학원 정관」

제80조(징계 및 재심청구) ①일반직원의 징계는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되 일반직원 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두어야 한다. <개정 2019.3.22.>

「직원징계위원회 규정」

제2조(구성) 위원회는 이사장이 위촉하는 법인 이사 2인과 외부위원 1인, 교원 또는 부참사 이상의 일반직원 4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외부위원 1인은 「정관」 제63조와 제63조의2의 외부위원에 대한 사항을 준용한다.

「학교법인피어선기념학원-민주노총전국대학노동조합 단체협약서」 (2021-2023)

제51조(각종 위원회 참여)

① 대학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각종 위원회의 조합의 균등한 참여를 보장한다.

1. 교무위원회(지부장 당연직)
2. 직원인사위원회(지부장 당연직, 조합추천 2인)
3. **직원징계위원회(조합추천 2인)**

□ 2023학년도 직원재심위원회 구성(안)

「학교법인 피어선기념학원 정관」

제80조(징계 및 재심청구) ②일반직원의 재심청구를 위하여 법인에 일반직원 재심위원회를 두되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규칙을 정한다.

「직원재심위원회 규정」

제2조(재심위원회 구성) ① 재심위원회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재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위촉한다. 다만, 직원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재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법인이사
2. 대학교육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또는 교원이었던 자
3. 당해 학교에 근속하는 부참사 이상의 직원
4. 법관, 검사, 변호사, 법학 박사 등 법률전문가

4호, 건설가계정 대손상각처리의 건

5호, 규정 개정 건

제정	개정	폐기	총계
-	5	-	5

1 규정 개정 목록

순번	규정명	개정일	시행일	구분
1	대학원 학칙	2023.00.00	2023.00.00	개정
2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2023.00.00	2023.00.00	개정
3	대학원 학위청구 논문에 관한 규정	2023.00.00	2023.00.00	개정
4	대학원 학위수여 규정	2023.00.00	2023.00.00	개정
5	대학원 장학금 지급 규정	2023.00.00	2023.00.00	개정

2 규정 개정 내용

1. 대학원 학칙 개정(안) : 대학원 교학팀

개정 사유	
▶ 중복되는 조문 삭제 및 마지막 학기에는 교과목 수강신청 없이도 등록금만 납부하면 논문 제출 가능 하도록 개정하여 학생들의 학업 부담 완화	
변경전	변경후
제7조(입학자격) ① 각 대학원의 각 학위과정의 입학 할수있는 자는 고등교육법 제33조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제7조(입학자격) ① 좌동

라야 한다.

1. 박사학위과정 :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2. 석사학위과정 :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② 피어선신학전문대학원 신학석사과정(Th.M.)의 지원자는 목회학석사과정(M.Div.)을 이수한 자 또는 총장이 인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자라야 한다.
 - ③ 삭제(2014.10.23.)
 - ④ 피어선신학전문대학원 철학박사과정(Ph.D.) 지원자는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 한다.(개정2006. 02.14., 2013.02.13., 2016.11.14., 2021.04.30.)

제8조~제13조 (생략)

제14조(성적평가) ① 학업성적의 등급, 점수 및 평점은 다음과 같다.

등급	A ⁺	A	B ⁺	B	C ⁺	C	F
점수	100-95	94-90	89-85	84-80	79-75	74-70	69이하
평점	4.5	4.0	3.5	3.0	2.5	2.0	0

불가피한 사유로 과목의 의무를 소정기간 내에 이행할수 없을 경우는 미완(Incomplete)을 줄 수 있다. 미완은 성적정정기간 내에 확정 성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간의 경과시까지 성적이 평가되지 않으면 미완은 F로 간주한다.

- ③ 평점 2.0이상을 취득학점으로 인정한다.
- ④ 매학기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 결석한 자와 수강 신청서 미제출자는 학점(패스학점 포함)을 인정하지 않는다

1. ~ 2. 좌동

② ~ ③ 좌동

④ (개정2006. 02.14., 2013.02.13., 2016.11.14., 2021.04.30., **삭제 2023.00.00**)

제8조~제13조 (현행과 같음)

제14조(성적평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매학기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 결석한 자는 학점(패스학점 포함)을 인정하지 않는다. (개정 2023.00.0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00월 00일부터 적용한다.

2.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개정(안) : 대학원 교학팀

개정 사유
▶ 등록금 납부와 수강신청으로 되어 있는 등록의 개념 에서 '수강신청' 부분 삭제

변경전	변경후
<p>제6조(등록) 학생은 매 학기 정한 기간 내에 등록을 필함으로써 해당학기의 학생자격을 얻는다. 등록은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강신청을 함으로써 완료된다.(개정 2011.02.10.)</p>	<p>제6조(등록) 학생은 매 학기 정한 기간 내에 등록 하여야 하며, 등록금을 납부함으로써 해당 학기의 학생자격을 얻는다. (개정 2011.02.10., 2023.00.00)</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00월 00일 부터 시행한다.</p>

3. 대학원 학위청구 논문에 관한 규정 개정(안) : 대학원 교학팀

개정 사유
▶ 논문제출 자격자에 학칙에서 정한 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외에 취득예정자를 포함하였으며, 논문지도비 납부 강행규정을 현실에 맞게 수정

변경전	변경후
<p>제2조(논문제출자격) 학위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칙에 정한 학점 이상을 <u>이수한 자로서</u> 전체 학점 평균평점이 3.0(B.0) 이상 인 자 2. 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은 6학기이상, 석사학위 과정은 4학기 이상 등록을 마친 자 3. 특수대학원은 5학기 이상 등록을 마친 자 <p>제3조(논문지도) ① 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은 5학기 초, 석사학위과정은 3학기 초, 특수대학원은 4학기 초(단, 피어선신학전문대학원(개정 2007.6.14.) 목회학 석사과정(M.Div.)은 5학기 초에 논문지도교수를 배정받아 2학기간 동안 7회 이상 논문지도를 받아야 한다. 단,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은 3학기부터 논문 지도교</p>	<p>제2조(논문제출자격) 학위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칙에 정한 학점 이상을 <u>취득한 자 또는 취득예정자로서</u> 전체학점 평균평점이 3.0(B.0) 이상 인 자 (개정 2023.00.00) 2. 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은 6학기이상, 석사학위 과정은 4학기 이상 등록을 마친 자 3. 특수대학원은 5학기 이상 등록을 마친 자 <p>제3조(논문지도) ① 좌동</p>

변경전	변경후
<p>수를 배정하여 논문을 지도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②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00월 00일 부터 시행한다.</p>

4. 대학원 학위수여 규정 개정(안) : 대학원 교학팀

개정 사유
<p>▶ 학생들의 시험 부담을 완화하고자 석사과정 종합시험의 과목수를 삭제하였으며, 학위논문 제출 자격에 학칙에서 정한 학점 이상 취득예정자를 추가</p>

변경전	변경후
<p>제8조(시험방법) ① (삭제 2022.08.24.)</p> <p>② 삭제 (2022.08.24.)</p> <p>③ 종합시험은 석사과정에 한하여 실시하며 전공 3과목을 필기시험으로 행한다. 단, 일반 대학원 음악학과 음악치료 전공은 2과목으로 하며, 피어선신학전문대학원 목회학석사과정 (M.Div.)은 5과목으로 한다. 또한, 대학원 사회복지학전공자는 시험과목 중 사회복지조사론을 필수 응시과목으로하고, 선택과목 2과목에 합격해야 한다.</p> <p>(개정 2004.11.17., 2005.09.02., 2014.10.23., 2015.02.10., 2016.11.03.)</p> <p>④ 종합시험 및 성서종합시험을 신청한 학생이 질병, 기타 부득이 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p> <p>⑤ 종합시험은 1회에 3과목 이상 응시할 수 없다.</p> <p>⑥ 논문자격시험은 박사과정에 한하여 실시하며, 박사과정 학과별 필수응시 및 선택과목은 아래와 표와 같다. (개정 2004.11.17., 2014.10.23., 2015.08.24., 2019.10.25.)</p>	<p>제8조(시험방법)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종합시험은 석사과정에 한하여 실시하며 전공종합시험으로 행한다. (개정 2004.11.17., 2005.09.02., 2014.10.23., 2015.02.10., 2016.11.03., 2023.00.00)</p> <p>④ 성서종합시험 및 종합시험과 논문자격시험을 신청한 학생이 질병, 기타 부득이 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08.24., 2023.00.00)</p> <p>⑤ (삭제 2023.00.00)</p> <p>⑥ 논문자격시험은 박사과정에 한하여 실시하며 전공종합시험으로 행한다. (개정 2004.11.17., 2014.10.23., 2015.08.24., 2019.10.25., 2023.00.00)</p>

변경전			변경후
학 과	필수응시과목	선택과목	
신학과(Ph.D.)	본인 전공분야 1과목 (구역, 신약, 조직, 역사, 실천, 상담 중)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조사방 법론 1과목	2과목	
상담학과	3과목		
아동청소년 학과			
국제물류학과			
부동산학과			
<p>제9조(합격인정) ① 성서종합시험은 신약, 구약 합의 평균 70점 이상, 종합시험은 각 과목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개정 2015.02.10., 2022.08.24.)</p> <p>② 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회수에 관계없이 재응시 할 수 있으며, 종합시험에 일부 불합격된 과목이 있을 때에는 떨어진 과목 수에 한해서 재응시 할 수 있다. (개정 2015.02.10.)</p> <p>제10조(학위논문 제출자격)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칙에 정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총평균 평점이 3.0/4.5 이상인 자로 정규등록을 필한 자 2.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개정 2022.08.24.) 3.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4. 재학연한이 초과하지 않은 자 5. 학위논문 연구윤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한자(신 설 2013.08.21.) 			<p>제9조(합격인정) ① 성서종합시험은 신약, 구약 합의 평균 70점 이상, 종합시험 및 논문자격시험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개정 2015.02.10., 2022.08.24., 2023.00.00)</p> <p>② 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회수에 관계없이 재응시 할 수 있다. (개정 2015.02.10., 2023.00.00)</p> <p>제10조(학위논문 제출자격)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칙에 정한 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또는 취득예정자로서 전체학점 평균평점이 3.0 (B.0) 이상 인 자로 박사학위과정은 6학기 이상, 석사학위과정은 4학기 이상 등록을 마친 자 (개정 2023.00.00) 2. ~ 5호. 현행과 같음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00월 00일 부터 시행한다.</p>

5. 대학원 장학금 지급 규정 개정(안) : 대학원 교학팀

개정 사유
▶ 타 대학 및 기관과의 상호교류(학생유치 등) 관련하여 협약기관 간 추천 학생(신/편입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근거 마련

변경전	변경후
<p>제5조(종류) ① 교내장학금 : 교내장학금의 종류와 내용은 [별표1]에 의한다. (개정 2016.11.14.)</p> <p>② 교외장학금 : 교외장학금의 <u>종류와 내용</u>은 [별표1]에 의하며, 지급기준은 장학금을 기탁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이 정한 바에 따르며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6.11.14.)</p>	<p>제5조(종류) ① 교내장학금 : 교내장학금의 종류와 내용은 [별표1]에 의하며, 별도 협약에 의한 장학금은 협약서에 따른다. (개정 2016.11.14., 2023.00.00)</p> <p>② 교외장학금 : 교외장학금의 지급기준은 장학금을 기탁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이 정한 바에 따르며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6.11.14., 2023.00.00)</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00월 00일 부터 시행한다.</p>

6호, 2022학년도 하반기 트랙전환 및 승진임용 심의 건

1 전임교원 트랙전환 및 승진임용 대상자 명단

번호	소속	현직급	성명	이사회 승인시 발령사항	비고
1					
2					
3					
4					
5					
6					
7					
8					

2

2022학년도 하반기(2023.03.01.자) 트랙 전환 및 승진임용 심의

「교원인사 규정」 교원임용 기준

1. 정년트랙 전환 임용 기준(현행)

구분	소요 년수	적용 대상	정년트랙전환 최소 기준		비고
			업적평정 점수	필수 연구업적	
조교수	5년	비정년트랙 전임강사로 신규임용 후 조교수 승진자	750/1000 이상	국내 1급 학술지 2편 이 상	▶2017년 9월 1일 이전 (구)전임 강사 또는 조교수 신규 임용자
	7년	2012. 7. 22. 전임강사제 폐지로 인한 조교수 자동 승진된 자			
		2012. 9. 이후 조교수로 신규 임용된 자			
부교수	6년	2017. 9. 1. 이전 부교수로 신규 임용된 자	862.5/1150 (75%) 이상	국내 1급 학술지 4편 이 상	

2. 교원 대상별 적용기준

구분	대상	규정	최소 기준			비고
			직위	업적평정 점수	필수 연구업적	
승진	2017. 3. 1. 이후 신규 임용자	현행 규정	조교수⇨ <u>부교수</u>	805/1150 (70%) 이상	단독 저자인 국내 1급 학술지 5편 이 상	▶승진제한 : 징계처분 집행종료 후 ①정직(18개월) ②감봉(12개월) ③견책(6개월) 미경과자 승진 불 가 ▶급품및향응 수수, 성폭행, 상습폭 행, 학생성적 관련 비위 징계자(각 각 6개월 가산) ▶공금 횡령·유용 징계자(각각 3개월 가산)
	2017. 4. 1. 이후 부교수 승진 자		부교수⇨ <u>교수</u>	862.5/1150 (75%) 이 상	단독 저자인 국내 1급 학술지 4편 이 상	
	2017. 4. 1. 이전 부교수 승진 자	이전 규정 (개정 2016. 11. 14.)	조교수⇨ <u>부교수</u>	700/1000 이상	국내 1급 학술지 3편 이상	
	2017. 4. 1. 이전 부교수 및 교 수 승진 심사 평정을 받은 자		부교수⇨ <u>교수</u>	750/1000 이상	국내 1급 학술지 2편 이상	

주1) 필수업적에 대한 인정기준: 재임용(공동저자 환산 적용), 승진임용(단독저자만 인정), 정년트랙 전환(승진기준 적용)

주2) 필수업적 인정기준은 「전임교원 재임용 및 승진임용 업적산정 세부지침」에 따름

7호, 연구년 조기 복귀 신청 심의 건

8호, 기타안건
